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607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7년 2월 6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기존 수입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규사무 위임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임이 불필요한 사무의 삭제 및 기타 위임 근거 법제명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계량에 관한 일부 사무권한이 구청장에 이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무를 추가로 위임
- 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규 위임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 다. 「의료법」에 규정된 ‘지도와 명령’등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 라. 자치구에 위임된 택시 및 여객자동차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
- 마. 계량에 관한 사무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품질시험소장과 구청장에 함께 위임된 사무 권한을 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행정주체로 권한 이관된 위임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항 및 법제명을 변경
- 사. 부서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명 정정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부 사무권한을 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환수하고, 서울시(이하 “시”) 조직개편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치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신규 위임사무 규정(안 별표)

1) 계량에 관한 사무 위임(안 별표)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전면개정 됨에 따라 법령상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외에 해당 사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 해당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안 별표는 ‘폐업 등의 명령 직권말소 등’, ‘과징금’, ‘지위승계’ 등 3건의 업무를 추가로 위임해 기존에 법령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사무 처리의 일관성을 담보하고자 함.
-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이 등록 및 신고처리, 각종 검사와 조사, 개선명령 등 계량에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새로 위임하고자 하는 3건의 업무를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

<계량에 관한 위임 사무>

사 무 명	수임기관	근 거 법 령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시장 → 구청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
과징금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제4항
지위승계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현재 계량에 관한 사무는 매년 약 5만건의 정기검사와 부정계량기 검사 및 단속에 따른 1,600여건의 사용중지 명령, 700여건의 개선권고 명령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업무는 전문 검사기관이 별도로 수행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25개 자치구별로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는 해당 사무의 위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문 인력 부족과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 문제 등을 사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2개 자치구(중구, 마포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의견없음’ 의견을 제시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사무 중 상당수가 이미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상황에서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통일된 기준이 요구되는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시가 품질시험소 등을 활용해 각 자치구의 해당 업무 수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 밖에 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위임 사무 가운데 수임기관이 품질시험소장과 구청장으로 이원화된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사무’ 등 일부 사무에 대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민원인 혼란 방지를 위해 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계량에 관한 위임 사무의 수임기관 변경>

사 무 명	수임기관	근 거 법 령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청문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 구청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관한 사무 위임(안 별표)

- 기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¹⁾관리대상 공산품 가운데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2014.6.3.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가운데 ‘판매중지·개선·수기 또는 파기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각종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개선과 수기·파기명령’과 ‘생활용품 등의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 추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무의 위임은 적절하다고 평가됨.

1) 2016년 1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통합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

- 신규 사무의 위임과 관련해 5개 자치구(성동, 광진, 은평, 마포, 서초)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치구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²⁾.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관한 위임 사무>

사 무 명	수임기관	근 거 법 령
판매중지·개선·수기 또는 파기명령	시장 → 구청장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43조

3)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위임(안 별표)

- 「의료법」 제35조 규정 등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업무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명령’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의료기관에 대한 위임 사무>

사 무 명	수임기관	근 거 법 령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시장 → 구청장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의료기관에 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 이 가운데 특히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업무’는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사항이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리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5개 자치구도 위임에 이견이 없는 상황임.
- 다만,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행사하는 업무는 광역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판매중지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150건 내외로 발생.

- 실제로 양천구는 해당 업무의 위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사무위임에 ‘부동의’의견을 제출하였음.
- 판단컨대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와 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³⁾.

다. 자치구 위임사무의 환수(안 별표)

1) 외국인 대상 택시요금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처분 사무(안 별표)

- 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과 관련해 자치구의 온정주의적인 낮은 행정처분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현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택시 운전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가운데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 사무’ 권한을 시가 회수하고자 하는 것임.
-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여행&관광 경쟁력 리포트 2015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은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환대 태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⁴⁾.
- 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근절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월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과 같은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시 조사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발되는 부당행위 가운데 약 40%만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임(참고자료 1).

3) 서울시는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사태시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경험이 있음.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지수 분석」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 현황>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총 건수 (민원/ 적발)	행정 처분	행정 처분율	총 건수 (민원/ 적발)	행정 처분	행정 처분율	총 건수 (민원/ 적발)	행정 처분	행정 처분율
218건	63건	28.9%	154건	54건	35.1%	228건	92건	40.4%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처분권한의 회수에 대해 대부분의 자치구는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처분권한 이원화로 인한 시민불편(서초)과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강남)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의 근절을 위한 시의 의지와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지만 처분권한의 회수가 부당요금 징수행위의 근절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부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임.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안 별표)

-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종 위임사무에 인용되고 있는 인용조문의 변경과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권한이관 사무 위임조항 삭제>

주관부서	권한이관 기관 (근거법령)	개정내용
민생경제과	구 청 장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호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사무 중 <u>가, 나, 다, 라, 바, 사, 차목 삭제</u>

- 우선, 「계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로 법률상 권한이 명백히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조항을 삭제하였음.
-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과 법제명이 변경된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인용 법제명 및 조항 변경>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자연생태과	3. 야생동물의 전문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 등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
	나. 지정서 교부	제10조제3항 → 제44조의2제3항
	다. 지정 취소	제11조의2 → 제34조의5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이 밖에 시의 조직개편과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종교 및 전통사찰 관련 사무의 주관부서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정책과로 변경하였음.

<위임사무 주관부서 명칭 변경>

변경사무	주관부서	
	현행	변경
종교 및 전통사찰 관련 사무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 변경은 사소하지만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1>

자치구별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 현황

구분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		
	총 건수 (민원 및 적발)	행정 처분	행정 처분율	총 건수 (민원 및 적발)	행정 처분	행정 처분율	총 건수 (민원 및 적발)	행정 처분	행정 처분율
합계	218	63	28.9%	154	54	35%	228	92	40.3%
강남구	5	1	20.0%	4	2	50.0%	2		0.0%
강동구	6	2	33.3%	8		0.0%	4		0.0%
강북구	10	2	20.0%	2	1	50.0%	4	1	25.0%
강서구	35	6	17.1%	18	7	38.9%	22	9	40.9%
관악구	8		0.0%	2		0.0%	5	1	20.0%
광진구	6	2	33.3%	3		0.0%	5		0.0%
구로구	7	2	28.6%	1	1	100.0%	12	3	25.0%
금천구	3	1	33.3%	3		0.0%	5	2	40.0%
노원구	19	9	47.4%	28	16	57.1%	63	43	68.3%
도봉구	18	7	38.9%	7	2	28.6%	10	2	20.0%
동대문구	5	1	20.0%	10	3	30.0%	2	1	50.0%
동작구	2		0.0%	1	1	100.0%	3	2	66.7%
마포구	7		0.0%	5		0.0%	8		0.0%
서대문구	6	1	16.7%	5	2	40.0%	4	1	25.0%
서초구	2	1	50.0%	2		0.0%	2	1	50.0%
성동구	9	4	44.4%	2	1	50.0%	7	3	42.9%
성북구	17	8	47.1%	10	5	50.0%	10	3	30.0%
송파구	14	5	35.7%	9	4	44.4%	13	5	38.5%
양천구	15	4	26.7%	10	3	30.0%	20	5	25.0%
영등포구	5	2	40.0%	5	1	20.0%	4	2	50.0%
용산구	2		0.0%	3	1	33.3%	3	2	66.7%
은평구	9	4	44.4%	7		0.0%	9	3	33.3%
중구			0%	1	1	100.0%			0%
중랑구	8	1	12.5%	8	3	37.5%	11	3	27.3%

<참고자료 2>

위임사무별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계량에 관한 사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사무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외국인 대상 택시요금 부당징수 행정처분 환수
			지도/명령	병원급 허가사항 변경	
종로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중구	반대 (전문인력 부족)	의견없음	동의	동의	의견없음
용산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성동	의견없음	반대(인력)	동의	동의	의견없음
광진	의견없음	반대 (인력/예산)	동의	동의	동의
동대문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중랑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성북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의견없음
강북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도봉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노원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은평	의견없음	반대 (인력/교육)	동의	동의	동의
서대문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마포	반대	반대	동의	동의	동의
양천	의견없음	의견없음	부동의 (광역행정)	동의	의견없음
강서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구로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금천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영등포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동작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관악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서초	의견없음	반대(업무량)	동의	동의	부동의 (처분권한 이원화로 인한 시민불편)
강남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조건부 동의 (외국인 대한 정의 필요)
송파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동의
강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동의	동의	의견없음

<관련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3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등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적합성사업자
7.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10.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13.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량기 표시의 개선 명령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

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4항 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시험·검사기관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7. 삭제
8. 삭제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④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